#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우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596

발의연월일: 2024. 9. 3.

발 의 자: 김우영·송재봉·김동아

윤종군 • 양문석 • 김성환

박민규 · 김남희 · 김문수

차지호 · 조계원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위치정보는 오늘날 인공지능, 자율주행,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. 이러한 위치정보활용 증대 경향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부각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.

이에 목적규정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,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위치정보의 보호·이용 및 위치정보산업 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조, 제3조, 제35조, 제38조 및 제38조의2).

법률 제 호

##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이바지함을"을 "이바지하고,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을"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"보호 및 이용"을 "보호·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"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이용"을 "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"보호 및 이용"을 "보호·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"보호 및 이용"을 "보호·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"으로 한다.

3의2.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제5장의 제목 중 "조성"을 "조성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"으로 한다. 제35조의 제목 중 "이용촉진"을 "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보호 및 이용"을 "보호·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진흥"으로, "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"를 "다음 각 호의 사업을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(이하

- "위치정보사업등"이라 한다)의 활성화를 위한 법·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지원사업
- 2. 위치정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위치정보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
- 3. 위치정보사업등의 육성을 위한 선도·응용기술사업 및 관련 연구 지원사업
- 4. 위치정보사업등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를 위한 사업
- 5.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 공공목 적의 위치정보이용 기반조성사업
- 6. 위치정보 관련 기술, 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
- 7. 위치정보 보호 및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표준화 관련 사업
- 8.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"를 "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한국인터넷진흥원"이라 한다),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이하 "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"라 한다) 또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"로 하고, 같은항에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

의 진흥에 관한 업무

5.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·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제38조의2 중 "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은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"으로 하고, 같은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
- 2.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
- 3.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임직원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위치정보의	제1조(목적)
유출·오용 및 남용으로부터	
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	
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	
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	
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	
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<u>이바</u>	
<u>지함을</u> 목적으로 한다.	하고,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
	<u>촉진함을</u> .
제3조(위치정보의 <u>보호 및 이용</u>	제3조(위치정보의 <u>보호·이용 및</u>
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) 방송	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
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	한 시책의 강구)
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	
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<u>이</u>	
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	<u>이용 및 위</u>
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	치정보산업의 진흥
하여야 한다.	
1. 위치정보의 <u>보호 및 이용</u> 등	1 <u>보호·이용 및</u>
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	위치정보산업의 진흥
2. ·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의2.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및

- 4. ~ 6. (생략)
- 7.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7. -----보호·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

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

제35조(위치정보의 이용촉진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 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 여 공공, 산업,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위치정보산업의	진흥에	관한
사항		

- 4. ~ 6. (현행과 같음)
- 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

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 제35조(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 에 관한 사업) ① -----

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-----

----<u>다음 각 호의 사업을</u>----

- 1.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 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(이하 "위치정보사업등"이라 한다)의 활성화를 위한 법・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지원사 업
- 2. 위치정보에 관한 기술개발

및 보급 등 위치정보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3. 위치정보사업등의 육성을 위 <신 설> 한 선도 • 응용기술사업 및 관 런 연구지원사업 4. 위치정보사업등의 품질개선 <신 설> 및 품질평가를 위한 사업 <신 설> 5.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 공공목적의 위치정보이용 기 반조성사업 6. 위치정보 관련 기술, 기기 <신 설>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 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7. 위치정보 보호 및 수집ㆍ이 <신 설> 용ㆍ제공에 대한 표준화 관련 사업 8.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<신 설>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 한 사업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38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제38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(생 략) ②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 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바에 따라 「정보통신망 이용」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른 한국인 전 기본법」 제34조에 따른 한 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 <신 설>

4. (생략) <신 설>

제38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8 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 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

-----하국이터 흥원"이라 한다), 「방송통신발 전 기본법」 제34조에 따른 한 국정보통신기술협회(이하 "한 국정보통신기술협회"라 한다) 또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-----1. ~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치 정보의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 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업무 4. (현행과 같음) 5.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ㆍ 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업무 제38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-----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-----

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 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본다.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<신 설>

\_\_\_\_\_

-----.

- 1.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
- 2.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
- 3.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임직원